

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윤영희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04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08월 25일

발 의 자: 윤영희, 강석주, 김영옥,
박강산, 송경택, 아이수루,
, 유만희, 이상욱, 이소라,
이종태, 이효원, 최재란,
황유정 의원(13명)

1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고, 서울특별시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응급의료기관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제외함(안 제2조제5호).
- 나. 서울특별시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(안 제4조제2항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 중 “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,”를 “지정된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응급의료시행계획”을 “응급의료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에 따라 서울특별시응급의료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서울특별시응급의료시행계획”을 “시행계획”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응급환자 발생 현황, 응급의료 제공 현황 등 응급의료 현황
2. 응급의료 자원조사 등을 통한 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
3.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 주요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
4. 응급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·조직 등의 기반 마련 및 응급의료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
5. 그 밖에 시장이 기본계획의 시행 및 응급의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1조제4항 중 “서울특별시응급의료시행계획”을 “시행계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2월 22일 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“응급의료기관”이라 함은 「의료법」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의하여 <u>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, 권역응급의료센터, 전문응급의료센터,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</u>을 말한다.</p> <p>6. ~ 9. (생략)</p> <p>제4조(서울특별시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<u>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</u></p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<u><신 설>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----- ----- 지정된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6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서울특별시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응급의료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에 따라 서울특별시응급의료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</u>----- -----.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u></p>

1. 응급환자 발생 현황, 응급의료 제공 현황 등 응급의료 현황
2. 응급의료 자원조사 등을 통한 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
3.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 주요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
4. 응급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·조직 등의 기반 마련 및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
5. 그 밖에 시장이 기본계획의 시행 및 응급의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1조(응급환자 이송) ① ~ ③ (생략)

④ 시장은 구급차 등에 의하여 이송된 응급환자에 대한 현황을

③ ----- 시행계획 -----

 -----.

제11조(응급환자 이송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파악하여 이를 서울특별시응급
의료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
다.

⑤ ~ ⑦ (생략)

----- 시행계획-----

--.

⑤ ~ ⑦ (현행과 같음)